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
 사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차

1. 예산총칙	-----	1
2. 세입·세출예산 총괄	-----	3
3. 세입예산	-----	4
4. 세출예산	-----	6

1. 예산 총칙

1조(예산의 규모) 2021 제3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예산총액

(: 천원)

구 분	예산액(3차추경)	기정예산액(2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751,542	2,930,408	△178,866	-6.1%

○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3차추경)	기정예산액(2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751,542	2,930,408	△178,866	-6.1%
사 업 수 입	421,546	540,412	△118,866	-22%
보조금 수입	2,281,997	2,341,997	△60,000	-2.56%
후원금 수입	4,660	4,660	0	0
전 입 금	12,000	12,000	0	0
이 월 금	31,329	31,329	0	0
잡 수 입	10	10	0	0

(: 천원)

구 분	예산액(3차추경)	기정예산액(2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751,542	2,930,408	△178,866	-6.1%
사 무 비	347,341	348,139	△798	-0.23%
재 산 조성비	6,940	6,940	0	0
사 업 비	2,367,377	2,545,445	△178,068	-7%
잡 지 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29,884	29,884	0	0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예산의 관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지침을 준용한다.